

# 교통세 인상 최소화해야

석유협회, 교통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도 건의

석유협회는 정부가 SOC 투자재원 및 실업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세의 탄력세율을 20~30%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교통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최소화하고, 교통세 신고 납부기한도 연장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석유협회는 IMF 체제 이후 정유업계는 환율 상승에 따른 원유도입대금 급증과 막대한 환차손등으로 지속적인 자금난에 처해 있으며, 더구나 석유수요의 급감과 석유제품 수출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수출채산성 악화로 최악의 경영난하에서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휘발유 교통세를 기본세율 345원/리터에서 455원/리터로 32%나 인상한 바 있으며, 또한 현행 교통세 신고 납부기한이 제조장 반출일로부터 평균 45일로 되어 있으나, 정유사가 생산 반출후 판매되어 실제로 대금이 회수되는 기한은 약 75일 정도 소요됨으로써 일정기간 세금을 선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앞으로 휘발유 교통세가 인상될 경우, 세금 조기납부로 인한 자금부담이 연간 약 6,300억~6,800억원에 이르게 되어 정유업계의 자금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석유협회는 또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세 인상은 곧바로 물가상승과 소비자부담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으며, 유가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낮아 교통량 감소효과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교통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최소 수준으로 조정하고, 정유사들의 교통세 납부기한과 판매대금 회수기한을 일치시켜 기업의 자금흐름이 왜곡되지 않도록 향후 세법 개정시 교통세 신고, 납부기한을 제조장 반출일의 다음 달 말 일에서 익익월 말일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